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378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5. 2. 24.
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면적 표기를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수정함(안 제3조제5항)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제5항 중 “각각 1만3천제곱미터”를 “각각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”로 함.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5항 중 “각각 1만3천제곱미터”를 “각각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3조(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) ① ~ ④ (생략)	제3조(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	제3조(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) ① ~ ④ (개정안과 같음)
⑤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“시·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 면적”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.	⑤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면적”과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-- - 따른 --- 각각 1만3천제곱미터---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각각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 -----.
⑥·⑦ (생략)	⑥·⑦ (현행과 같음)	⑥·⑦ (개정안과 같음)